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(참조)
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(운행기록증 등)

1. 전세연 제2022-84호 (2022.6.8.)와 관련입니다.

2. “전세버스의 운행신고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“ 및 ”여객의 안전한 승차·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하는 내용“ 등 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운행기록증 관련 개정 내용

별지서식	개정사항 (추가사항)	비고
별지 제23호의2서식 (운행정보 신고서)	계약당사자, 계약일시, 탑승자수	
별지 제23호의3서식 (운행기록증)	계약일시	

※ 시행일 이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행기록증 시스템 개편 예정.

※ 서전버조 22- 126호(2022.06.09)

나. 운송부대시설(별표3) 조정

- 전세버스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·군에 임차할 수 있는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중 점검·정비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서로 맞닿은 시·군안의 점검·정비시설 임차하여 사용가능

다.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(별표4 제2호파목)

-여객의 안전한 승차·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 출발

※ 시행일

- 별표3 : 2022.06.08.
- 운행기록증 및 별표4 : 2022.09.01.

※ 붙임 : 전자관보 1부. [끝]
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과 장	박영수	부 장	라영석	실 장	박호동	전무이사	박태환

협조자
시행 서전버조 22- 126호 (2022.06.09) 접수 ( 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(교통회관 11층) / http://www.tourbus.or.kr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